

산학인재원 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계명대학교(이하 “우리 대학교”라 한다) 산학협력 사업과 교육부가 주관하는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(LINC+: Leaders in Industry-university Cooperation)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총장직속 기구로 설치한 산학인재원(이하 “인재원”이라 한다)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사업) 인재원은 제1조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.

1. 산학협력 역량강화(개정 2020. 7. 1.)
2. 사회수요기반 인력양성
3. 사회맞춤형 산학협력체제 구축
4. 현장실습지원센터 설치운영
5. 산학협업센터 설치운영
6. 창업교육센터 설치운영
7. 그 밖에 인재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2장 조직과 임무

제3조(부서 및 업무) ① 인재원에는 인재양성부, 성과관리부, 현장실습지원센터, 산학협업센터, 도시재생협업센터, 창업교육센터 및 행정실을 둔다.(개정 2019. 2. 1., 2020. 7. 1.)

② 인재양성부는 기업과 지역사회 수요맞춤형 인력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과 특화인재양성과정 운영, 캡스톤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③ 성과관리부는 사업성과의 관리 및 환류, 단위 사업 간 연계 및 통폐합 기획과 우수사례발굴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④ 현장실습지원센터는 현장실습과 인턴십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

⑤ 산학협업센터는 기업의 R&D과제 수행, 재직자 교육, 맞춤형 기업지원 등 기업과의 협력을 통합 지원하는 기업협업(ICC) 업무를 담당한다.(개정 2019. 2. 1.)

⑥ 도시재생협업센터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문제해결 지원, 산학협력 네트워크 구축, 지역사회 전문가 육성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협업(RCC) 업무를 담당한다.(신설 2019. 2. 1.)

⑦ 창업교육센터는 창업강좌운영, 창업동아리 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(신설 2020. 7. 1.)

⑧ 행정실은 인재원의 행정업무를 담당한다.(개정 2020. 7. 1.)

제4조(조직) ① 인재원에는 원장, 부원장, 부장, 센터장을 둘 수 있으며 행정실에는 실장을 둘 수 있다.

② 인재원에 산학협력중점교원, 전임연구원, 행정직원, 창업매니저, 취업매니저, 조교를 둘 수 있다.

③ 인재원 운영을 위하여 자문위원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.

제5조(임면) ① 원장과 부원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되 총장이 임면한다.

- ② 각 부장과 센터장은 교원으로 겸보하되 원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면한다.
- ③ 행정실장은 직원으로 보하되 총장이 임면한다.
- ④ 산학협력중점교원, 전임연구원, 행정직원, 창업매니저, 취업매니저 및 조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.

제6조(임무) ① 원장은 인재원을 대표하며 인재원의 운영을 관장한다.

- ② 부원장은 원장을 보좌하고, 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③ 각 부장과 센터장은 각 부와 센터의 업무를 담당한다.
- ④ 행정실장은 인재원 행정업무 전반을 담당한다.

제7조(위원회) 인재원 운영을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,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3장 사업추진위원회

제8조(설치) LINC+ 사업 추진 및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업추진위원회를 둔다.

제9조(구성) ① 사업추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산학부총장으로 하고 교무처장, 기획정보처장, 학생처장, 교육혁신처장, 산학협력단장, 공과대학장, 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.
- ③ 외부위원은 관련 산업체, 연구소, 지자체 등의 CEO 또는 실무책임자로 하고 약간 명을 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- ⑤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.

제10조(회의) ① 사업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- ② 사업추진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1조(심의사항) 사업추진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LINC+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
2. LINC+ 사업 예산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
3. LINC+ 사업 고가기자재 도입 심의와 운영에 관한 사항
4. LINC+ 사업 운영에 따른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사항
5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4장 자체평가위원회

제12조(설치) LINC+ 사업성과를 평가, 분석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두며, 전문성이 요구되는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3조(구성) ①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
- ② 위원장은 산학협력단장으로 하고 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약간 명을 원장이 위촉한다.
- ③ 외부위원은 관련 산업체, 연구소, 지자체 등의 전문가로 하고 원장이 위촉한다.
-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.

제14조(회의) ①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자체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5조(심의사항)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사업기간 중 평가지표 대비 사업 진척도에 관한 평가
2. 연차별 핵심성과지표 달성여부에 관한 평가
3. 평가결과의 차년도 사업 반영 계획에 관한 심의
4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5장 운영위원회

제16조(설치) 인재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제17조(구성)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하고 부원장, 인재양성부장, 성과관리부장, 현장실습지원센터장, 산학협업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은 교원 중에서 약간 명을 원장이 위촉한다.

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.

제18조(회의)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.

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9조(심의사항)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인재원 운영의 기본 계획 수립
2. 사업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
3. 규정의 제정과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연도별 사업 계획(사업비 집행계획 포함)의 수립
5. 현장실습지원센터, 산학협업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
6. 산학공동프로젝트와 유사 프로젝트 심의, 연구업적 심의
7. 교육과정 개설과 변경에 관한 사항
8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6장 산학협력발전위원회 (장 신설 2017. 12. 4.)

제19조의2(설치) 산학협력발전계획 수립 및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한 산학교육 대응체계 수립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학협력발전위원회를 둔다.(개정 2018. 9. 3.)

제19조의3(구성) ① 위원회는 원장을 포함하여 총장이 위촉하는 9명 내외의 내부 및 외부 위원으로 구성한다.(개정 2018. 9. 3.)

② 위원장은 원장으로 한다.

③ 위원장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④ 외부위원은 관련 산업체, 연구소, 지자체 등의 전문가로 위촉한다.(신설 2018. 9. 3.)

⑤ 간사는 행정실장으로 한다.

제19조의4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19조의5(심의사항)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(개정 2018. 9. 3.)

1. 산학협력발전계획 수립 및 점검에 관한 사항
2. 산학협력발전계획 환류에 관한 사항
3. 4차 산업혁명시대의 산학교육 대응체계 수립
4. 지역사회문제해결형 지역협력 모델 수립 및 활용 방안 도출
5. 4차 산업혁명기술기반 산학협력 발전 모델 수립 및 활용 방안
6.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제7장 재정

제20조(예산) 인재원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.

1. 중앙정부의 국고 지원금
2. 대구광역시 등 지방자치단체 지원금
3. 대학의 대응자금
4. 산업계의 산·학·연·관 협력기금, 연구보조금과 기부금
5. 협력업체, 협력기관의 대응자금
6. 교육, 연구 수입
7. 사용료, 관리비 수입
8. 그 밖의 수입

제21조(회계) 인재원의 회계는 「산학협력단 회계처리규칙」에 따른다. 다만, 사업비 중 교비지원금의 집행은 우리 대학교 「예산회계 규정」에 따른다.

제22조(예·결산과 사업계획) 원장은 인재원의 예산 및 사업계획서와 결산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8장 장학금

제23조(장학금) 원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인재원 사업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24조(세부사항) 인재원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.

부칙

1. 이 규정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.
2. 이 개정규정은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3. 이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.
4. 이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5. 이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직위 명칭변경)
6. 이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7. 이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(전부개정, 규정명 변경)
8. 이 개정규정은 2017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.
9. 이 개정규정은 2018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.
10. 이 개정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11. 이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